

# 서울고등법원

## 제 8 행정부

### 판 결

사 건 2017누310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민지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20, 2층(이화동, 삼영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이주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소철환, 홍성오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6466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30.  
판 결 선 고 2017. 8. 2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 중 별지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 이 유

###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하단 3행부터 4면 9행 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변경 부분

2)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표지'와 '첨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표지'의 본문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이 통신자료제공 요청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위 서면에는 '가입자와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위 서면에는 '의뢰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다)와 의뢰자, 회신정보 등이, 상단에는 위 공문의 문서번호, 수신처, 제목이, 하단에는 위 공문의 기안자, 결재자, 우편번호, 주소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의뢰사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으로 '첨부 파일'이 붙임 서류로 편철되어 있는 사실, '첨부 파일'에는 통신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와 그에 대한 조회기간(시작일자, 종료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에는 원고의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제1심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정보는 이 사건 정보

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표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표지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이 기재하도록 한 이들 사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기재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서는 공개에 의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에 의하여 확인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표지에 기재된 내용 및 그 구체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그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표지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붙임 서류인 '첨부 파일'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정보 중 '첨부 파일'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표지 본문의 '의뢰사항'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피고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혐의자 내지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그리고 그에 대한 조회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고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상이 알려지거나 추정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이러한 공개와 추정은 수사의 기밀성과 밀행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첨부 파일' 중 전화

번호란에 기재된 원고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원고의 전화번호에 대한 조회 기간을 포함한다), 즉 별지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기재 정보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것이어서 적법하고,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보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위법한 부분만 취소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가필곤 

판사 신숙희 신숙희 

판사 이승철 이승철 

별지

### 비공개 대상 정보

이 사건 정보<sup>1)</sup> 중 붙임 서류인 '첨부 파일'의 내용[단, 전화번호란 중 원고의 전화번호는 제외하되, 원고의 전화번호에 대한 시작일자란 및 종료일자란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된다] 끝.

---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2015-07604호 및 제2015-07607호)

# 정본입니다.

2017. 8. 28.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안경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